

## 이 미 현 (李美賢)



### 변호사

이미현 변호사는 198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시장과 조세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 및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자산유동화, 프로젝트금융, 구조화금융거래를 포함한 금융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과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수립,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기타 조세전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또한 2009년-2011년에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직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.

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8  
한진빌딩 본관 18층  
Direct) 02-772-4381  
Fax) 02-772-4001/2  
E-mail) mhl@leeko.com

### 주요처리사례

- 외국계 금융사가 라부안에 설립한 펀드의 원천징수세액환급 - 법인세법 제 98 조의 5 에 따른 최초의 경정청구
- K 공제회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대리
- 룬스타 보유 스타타워빌딩 매각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리
- Citibank 의 한미은행 인수합병 관련 법률자문
- 해태제과 LBO (2001) -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(Euromoney 발행)지가 선정하는 2001 Asian Legal Deals of the Year Award 에서 "Debt and Equity-Linked Deals of the Year 2001"으로 선정됨. (2002. 3. 7)
- 서울 씨티타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법률자문 (2000-2001): 건설중인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건
- 동양카드의 카드론 및 자동차등 할부채권 자산유동화 (국내 첫 유동화증권 발행 사례. 1998)
- 여객운송매출채권 유동화증권 해외발행관련 법률자문
- 항공기 금융관련 1685 억원 상당의 조세포탈고발사건 (전액 무혐의 처리)
- 성업공사의 부실채권(원금 기준 약 5500 억원 규모) 자산유동화 : 유동화증권의 첫 해외매각사례. 향후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매각의 모델이 됨.

### 전문분야

조세 및 관세, 금융

### 학력

Harvard Law School (LL.M.) : 1995  
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: 1985  
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: 1983

### 경력

법무법인 광장(Lee & Ko): 1987-현재  
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: 2009-2011  
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: 2008 -현재  
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: 2005-2009  
금융발전심의회 위원: 2004 - 현재  
국세심사위원회 위원: 2003 - 2005  
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: 1987

### 자격 / 회원

변호사(대한변협)  
미국 New York주 변호사 : 1995  
한태평양변호사회 (IPBA)  
국제변호사협회(IBA)

### 언어

한국어 및 영어

### 경력

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(2010. - 현재)  
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(2009. - 현재)  
 국세청 고문 (2009. - 현재)  
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(2009. - 현재)  
 하나은행 사외이사 (2009. - 2010.)  
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(2009. - 2011. 2.)  
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(2008. - 현재)  
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(2008. - 2010.)  
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(2005. - 2009.)  
 재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(2004. - 2007.)  
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(2004. - 현재)  
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(2003. - 2005.)  
 사법연수원 강사 (1996 - 현재)  
 미국 Chicago 소재 Rudnick & Wolfe 법률사무소 소속 외국변호사  
 (1995)  
 제 16 기 사법연수원 수료(1987)  
 제 26 회 사법시험합격 (1985)

#### 저서/논문/기사

- “The Increased Emphasis on Beneficial Ownership Analysis in Determining Eligibility of offshore income recipients to claim tax treaty benefits” *Financier Worldwide*, August 2010.
- "The new tax incentives for Islamic finance in South Korea" *Financier Worldwide*, Feb 2010.
- 국제금융계약에서의 이자조항 (BFL 2009.5)
- 담보부사채발생의 활성화 (BFL 2008. 9)
- 국제대출계약의 특징과 구조 - 신디케이트론을 중심으로 (BFL 2004.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)
-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 (법조, 2003. 10. 법조협회)
- 신탁방식에 의한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조세문제 (조세법연구 (IX-1), 2003. 7. 세경사)
- Securitization in Korea (*Journal of Korean Law* Vol 2, Number 1, 2002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)
-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대한 고찰 (인권과 정의 275호, 1999.7. 대한변호사협회지)
- 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증권화에 대한 고찰 (변호사 28호, 1998, 서울지방변호사회)
- Tax Issues on TIGRs and CATS (조세법연구(II), 1996, 세경사)

- Tax Issues On Coupon Stripping and Related Transactions  
(Harvard Law School, LL.M. Paper)
- 개발도상국의 기술도입과 특허제도 (1985년. 서울대학교 대학원  
법학과 석사논문)